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지침

시행일 : 2019. 03. 01.

제1조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의 개발·변경·운영·평가, 교과목의 개설·폐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결정의 독자성)

교육과정의 개발·변경,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대학원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각 전공별 균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개설·평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내규 제36조에 의한 인정학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소집)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회는 사안별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기 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준비단이 교육과정 심의를 담당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